

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46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1. 10.

발의자 : 서영교 · 권미혁 · 윤관석

박완주 · 김해영 · 강병원

김상희 · 도종환 · 전혜숙

박광온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,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「민법」이 개정(법률 제10429호, 2011. 3. 7. 공포, 2013. 7. 1. 시행)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, “금치산자” 및 “한정치산자”를 “피성년후견인” 및 “피한정후견인”으로 개정함(안 제9조제1항제1호).

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 중 “금치산자”를 “피성년후견인”으로, “한정치산자”를 “피한정후견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<u>금치산자</u> 또는 <u>한정치산자</u></p> <p>2. ~ 5. (생 략)</p> <p>② • ③ (생 략)</p>	<p>제9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----- ----- ----- ---.</p> <p>1. <u>피성년후견인</u>-----<u>피한정후 견인</u>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• ③ (현행과 같음)</p>